

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황명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04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6. 24.

발 의 자 : 황명선 · 민병덕 · 송옥주
박정현 · 김한규 · 박 정
김현정 · 전재수 · 이개호
최혁진 · 박용갑 · 정동영
정을호 · 추미애 · 차규근
윤준병 · 백선희 · 정진욱
황정아 의원(1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공간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의 장(이하 “관리기관의 장”)은 공간정보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, 다만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도심에서 땅꺼짐(싱크홀)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,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제작·관리하는 ‘지반침하 안전지도’와 같은 공간정보를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과 보안관리규정 등을 근거로 비공개하고 있어 국민들의 안전과 알 권리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

있음.

이에 관리기관의 장에게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공간정보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고, 비공개 대상 공간정보의 사유와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33조제1항 및 제2항).

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1항 본문 중 “한다”를 “하며,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공간정보의 경우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 대상 공간정보의 사유와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(공간정보의 공개) ① 관리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 하는 공간정보를 국민이 이용 할 수 있도록 공개목록을 작성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공개하여야 <u>한다</u> . 다 만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비 공개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.	제33조(공간정보의 공개) ① 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하며, 국민</u> <u>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</u> <u>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</u> <u>는 공간정보의 경우 국민에게</u> <u>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노력하</u> <u>여야 한다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<u><신 설></u>	② <u>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단</u> <u>서에 따른 비공개 대상 공간정</u> <u>보의 사유와 범위에 관한 세부</u> <u>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인터넷</u> <u>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</u> <u>하여야 한다</u> .
② (생 략)	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